

인천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3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39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소103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 선고 2021. 1. 2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소103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2,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10. 5.까지 C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은 2018. 6. 26. 무렵 피고로부터 D 명의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당시 E이 피고에게 제출한 "B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서명란'이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이름이 자필로 쓰여 있고, D의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주식배정표(이하 '이 사건 첨부서류'라고 한다)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D은 2018년 8월 무렵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F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연체 카드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연체 카드대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19. 3. 15. 피고에게 연체 카드대금 6,902,2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카드 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연체 카드대금 6,902,27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6,902,27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연대보증 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자가 원고가 아닌 E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인카드 카드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체 카드대금 6,902,27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이 이 사건 연대보증 서명란에 원고 이름을 기재할 당시 이 사건 첨부서류와 원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이 사건 연대보증 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점, ② E이 소지하던 이 사건 첨부서류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고,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이 원고에게 교부한 약정서(갑 제6호증의 1)에 "B 신청 시 연대보증(날인)에 관하여 명의도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이 사건 연대보증 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인카드 발급 이후 수차례에 걸쳐 카드대금이 결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계약도 사후적으로 추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D의 이 사건 법인카드 카드대금채무와 그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별개의 채무인 이상, D 명의의 통장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의 카드대금채무가 수차례 결제되었고 당시 원고가 D의 대표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경계계약에 의한 피고 채무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의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는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계에 의하여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2018년 10월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의 카드대금채무 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이후인 2019. 3. 15. 원고가 피고에게 6,902,275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비채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연체 카드대금의 독촉을 받아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연체 카드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나)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연체 카드대금을 변제한 사정 및 전술한 바와 같이 E이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 카드대금을 변제한 것이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광우

판사오희록

판사윤성현